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51326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조홍래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2021. 6. 16.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20. 9. 7.

분식품류 · 떡류 · 제빵 디저트류 등 제조 ·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생산한 제품을 원고가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대여금으로 2020. 9. 14. 5,000만 원, 2020. 10. 12. 5,000만 원, 2020. 10. 15.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금금으로 2020. 11. 30. 3,000만 원, 2020. 12. 30.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20. 12. 18. 대표자인 사내이사가 종전의 E에서 F으로 변경된 이후 원고에 대한 제품공급을 중단하고 2021. 6. 16. F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및 피고와 사이에, C가 G에 대하여 부담하는 10억 1,170만 원의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포함한 C의 유 · 무형자산, 영업권 및 본사 소재지 임차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다만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G에게 양도하기로 함)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유형자산인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한 다음 2021. 8. 18. 폐업하였다.

마. 한편, C는 2020. 12. 31. 당시 영업손실이 10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자본금 8억 7,000만 원이 잠식되는 등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입주 건물의 차임 및 관리비도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8,000만 원 상당의 선금금 반환채권이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자본이 잠식되어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G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그의 전 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C에 대하여 10억 1,17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던 G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 다음 피고 앞으로 C의 재산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이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에 대한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에게, 파산상태에 이른 C로부터 G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C의 재산 일체를 양도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로써 C에 대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 또한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하성원

별지

과목	자산명	취득일
기계장치	기계장치	2020-02-25
	자동포장기계	2020-07-27
	군고구마기계가스식군발통(고구마굽는기계)	2019-11-29
차량운반구	.	.
비용	사무용 복합기 등	2019-11-04
	커피머신외	2019-12-05
	시스템난방기	2020-06-27
	팜업집기	2019-12-10
	집기 1X496,000	2020-11-06
	복합기외	2019-12-13
	냉동, 냉장고/작업대외	2019-12-31
	주방가구	2019-12-31
시설장치	집기 1X400,000	2020-11-16
	스파믹서기 80T[sp-800] 1X 900,000	2020-01-04
	제과기구외	2020-02-04
	제빙기100K 1	2020-02-21
	로터리액오븐(36매) 1X 17,200,000	2020-03-23
	알금조리기	2020-05-25
	전기용 데크오븐(스팀2,세라믹물2)	2019-11-05
	쇼케이스 주문제작	2019-11-13
	재료보관용 스텐	2019-11-14
	쇼케이스3500 1	2020-02-14
	AL신형462가벼운절판(400*600,가벼움)※외64건	2020-03-12
	주문타르트 80*H25(비탁40)	2019-11-16
	쇼케이스1500, 사선, 양문	2019-11-18
	썬팬카	2019-11-26
	(연노랑)PP행보관통대(높이130) 20X21,000	2020-06-03
	(연노랑)PP행보관통대(높이130) 30X21,000	2020-06-17
	우복스	2019-11-29
	미니컨벡션오븐	2019-12-06
	(연노랑)PP행보관통대(높이130) 30X21,000	2020-06-25
	25울냉동, 디지털	2019-12-09
	KIFT-D4HL-ETDP-K	2019-12-31
	컨벡션오븐	2019-12-31
	믹서기12인치외	2019-12-31
	정계현점 장비(그라인더)	2020-09-16
	타르트 진열집기 3,300,000	2020-02-29
	1층창고 및 외부 출입구/간판 46,070,000	2020-11-02

